

성북의 미래, 현장에서 답을 찾다!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홍보전산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청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독자 참여 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나. 독자퀴즈 등 소식지 구독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1. 9. 30 ~ 2021. 10. 20(20일간)

- 예고결과 : 해당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검토의견 반영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여부	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
성별 영향 평가	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	반영	제6조(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발행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 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2회에 한하여”를 “두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2회에 한하여”를 “두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,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
2.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,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

② 원고료 등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)	제6조(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)
① 발행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① ----- ----- <u>10명 이내의</u> <u>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</u> <u>한다.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2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<u>두 차례만</u> ----- -----.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명예기자단 구성) ① · ② (생 략)	제7조(명예기자단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시 동별 2명 이내로 하고,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한 차례만</u> -----.
④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어린이 ·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어린이 · 청소년명예기자단 및 어르신명예기자단을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린이 · 청소년명예기자과 어르신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<u>2회에 한하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두 차례만</u> -

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8조(원고료 등)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주민이야기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원고료 등) 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,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

2.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,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

② 원고료 등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구민 참여에 따른 경품제공 [안 제8조]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홍보전산과장 유 미 조